

제九十八호

서울특별시

발행소 서울특별시

단기四二九四年八月三十一일 일제

동부년월일단기四二九四年八月三十一일 일제

서울특별시

발행인 윤재일

공보과

편집인 박종순

인쇄소 정부간행물인쇄주식회사

차 례

조	규	훈	고	사	광
제	칙	령	시	고	고
.....
.....

조 례

●서울특별시條例第二〇八號

서울特別市立交響樂團設置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三條中 「歌謠普及」을 「交響樂의普及」으로 한다

第四條의 二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交響樂團運營의 重要事項에 關한 서울特別市長의 諮問에 應하기 爲하여 서울特別市立交響樂團 諮問委員會(以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委員會는 委員長一人 副委員長一人과 委員七人 以內로 構成하고 委員長은 副市長, 副委員長은 委員中의

서울特別市의 市民 情緒生活의 向上과 民族文化의 淨化를 爲하여 서울特別市立交響樂團(以下交響樂團이라 한다)을 둔다

第一條 市立交響樂團은 서울特別市에 둔다

서 市長이 委屬하며 委員은 音樂에 關한 學識經驗이 豊富한 人士中에서 市長이 委屬한다

本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立交響樂團設置條例中 改正條例

現 行 改正案

第一條 市立交響樂團은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二條 同上

第三條 同上

第四條 同上

第五條 同上

第三條 交響樂團의 管

普及及音樂演奏의 關한 事項을 管掌한다

第四條 交響樂團에 團長

과 專任指揮者를 團長은 서울特別市 團

市長이 된다

團長은 市長의 命을

받아 團務를 掌理하며

所屬敎員을 指揮監督한

다

專任指揮者는 團長의 命

을 받아 音樂에 關한 事

項을 分掌하고 音樂演

奏를 指揮한다

交響樂團에 團員을 前項

團員의 定員은 市長이

定한다

第四條의二 交響樂團運營

에 關하여 市長의 諮問에

應하여 音樂演奏計劃, 音樂演奏, 音樂指揮, 其他音樂向上에 關

한 事項을 管掌한다

第三條 交響樂團의 交響

普及及音樂演奏의 關한 事項을 管掌한다

第四條 上 同

하여 必要事項을 市長에게 建議하기 爲하여

서울特別市立交響樂團運營委員會(以下委員會라 한다)를 設수한다

委員會는 委員長一人 副委員長二人과 委員十五

人以內로 構成하고 委員長은 市長, 副市長中

一人은 副市長, 一人은 委員會에서 互選하며 委員은 音樂人和 音樂에

關係있는 人士 또는 서울特別市議會議員中에서

市長이 委囑한다

第四條의三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第四條의四 委員會의 職務를 整理하기 爲하여

幹事와 書記를 設한다

幹事와 書記는 市公務員中에서 市長이 命한다

(以下委員會라 한다)를 設수한다

委員會는 委員長一人, 副委員長一人과 委員七

人以內로 構成하고 委員長은 副市長, 副委員長은 市長

中에서 市長이 委囑하며 委員은 音樂에 關한 學識經驗이 豐富한 人士中에서 市長

이 委囑한다

第四條의三 上 同

第四條의四 上 同

第五條 本條例施行에 關

하여 必要한 事項은 市長이 따로 定한다

附則

本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五條 上則

附則

上則

內務部長官 承認을 얻어 制定한 서울特別市政諮問委員會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檀紀四千二百九十四年八月三日

서울 特別市長

●서울特別市條例第二〇九號

서울特別市政諮問委員會條例

第一條(目的) 市長의 諮問에 應하여 市政의 向上發

展을 爲한 基本方針 綜合計劃 및 特定한 事項에 關한

研究를 하기 爲하여 서울特別市政諮問委員會(以下委

員會라고 한다)를 둔다

第二條(任務) 委員會의 主要任務는 아래와 같다

一 基本方針 및 綜合計劃에 關한 建議

二 市民의 福祉 및 公益을 爲한 基本問題 또는 資

料의 提供

三 特別市가 提示하는 問題의 調査 및 研究

四 特別市의 各種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要請한 問

題에 對한 助言

第三條(構成) 委員會의 構成은 아래와 같다

一 委員會는 委員 二名以內로 構成하며 委員은

市政에 關하여 學識, 經驗을 가진者中에서 市長

이 委囑한다

二 委員會에 委員長을 둔다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하고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會

務를 統理하며 有故時는 委員長이 미리 指名한

委員이 그職務를 代理한다

三 委員會에 附議할 案件을 調査研究하기 爲하여

委員會에 常任市政研究會(以下研究會라고 한다)를 둔

다

研究會長 및 會員은 委員長이 任命하고 研究會의

構成, 職能 및 運營은 特別市規則으로 定한다

第四條(市職員의 參與) 委員會의 案件에 따라 市職員도

委員會會議에 參與할 수 있다

第五條(幹事) 委員會에 非常任의 幹事六名을 둔다

幹事는 各局의 職員中에서 市長이 任命한다

幹事는 委員會의 事務에 關하여 各局課의 連絡에

圖助한다

第六條(運營) 委員會는 委員의 二分의 一以上 出席하

지 할수면 會議을 開수있다

委員會의 議事는 出席委員의 過半數로서 決定하고

可否同數時는 委員長이 決定한다

第七條(經費) 委員會에 必要한 經費는 서울特別市規

則으로 定한다

第八條(會則으로의委任) 本委員會條例를 實施하기爲한

細部事項은 委員會會則으로서 委員長이 定한다

附則

本條例는 公布한날부터 施行한다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서울特別市市稅條例를 改

正하여 이에 公布한다

檀紀四千二百九十四年八月十一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서울特別市市稅條例第二〇號

서울特別市市稅條例中 다음과같이 改正한다

第二條中第五號 家屋稅, 法別表第二號의 賦課額數 一

個에 對하여 「一圓五〇錢」을 「二圓」으로 同條第七號

의 酒稅 牛一頭에 對하여 「二,五〇〇圓」을 「三,〇〇〇

圓」馬一頭에 對하여 「八〇〇圓」을 「一,〇〇〇圓」

으로 同條第九號 車輛稅法別表第五號의 稅額의 「百

分の百五十」를 「百分의二百」으로 한다

第六條中 但 「二八等以下」를 「三九等以下」로 한다

附則

本條例는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但 戶別稅는 檀紀四千二百九十四年度第二期분부터 家

屋稅와 車輛稅는 檀紀四千二百九十五年度부터 施行한다

규칙

●서울特別市規則第二〇七號

서울特別市立交舞樂團運營規則中 다음과같이 改正한다

第一條를 다음과같이 改正한다

서울特別市立交響樂團(以下交響樂團이라한다)은 左의 事項을 掌管한다

- 一、市民을 爲한 音樂會
- 二、外來貴賓을 爲한 音樂會
- 三、親善을 爲한 巡演
- 四、其他 必要한 演奏

附則

本規則은 檀紀四二九四年七月三一日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立交響樂團運營規則中 改正規則

現行

- 第一條 서울特別市立交響樂團(以下交響樂團이라한다)은 左의 事項을 掌管한다.
- 一、市民을 爲한 音樂會
- 二、新人(대부)를 爲한 音樂會
- 三、外來貴賓을 爲한 音樂會
- 四、오케라 演奏會
- 五、親善을 爲한 音樂會

改正案

- 第一條 서울特別市立交響樂團(以下交響樂團이라한다)은 左의 事項을 掌管한다
- 一、市民을 爲한 音樂會
- 二、外來貴賓을 爲한 音樂會
- 三、親善을 爲한 巡演
- 四、其他 必要한 演奏

第二條 交響樂團에 左의 公務員을 둔다

地方參事
地方主事

前項의 公務員의 定員은 따로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三條 地方參事, 地方主事, 地方書記는 上司의 命을 받아 團의 事務를 處理한다

第四條 交響樂團에 演奏를 爲하여 必要한 囑託을 둔다

前項의 囑託은 每年度豫算으로서 定한다

附則

本規則은 檀紀四二九〇年八月一日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市民證發給規則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檀紀四二九四年八月十一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第二條 上同

第三條 上同

第四條 上同

附則

本規則은 檀紀四二九四年七月三一日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規則第二〇八號

서울特別市民證發給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五條(發給申請) 市民證의 發給을 받으려 하는者는

市民證發給申請書(第一號書式)에 六個月以內에 攝影

한 上半身小型 寫眞二張을 添付하고 手數料로서

定額의 收入證紙를 붙여 居住地洞長을 經由하여 管

轄支署(派出所)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十條第一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十條(取扱方法) 警察署長이 支署(派出所)로부터 市

民證發給申請書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內容事實을 嚴

密히 審査한後 左의 方法에 依하여 遲滯없이 市民

證을 發給 支署(派出所)主任으로 하여금 申請人에게

交付토록 하여야 한다

附 則

本規則은 八月一일부터 施行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훈령제九二호

六五二八

서울특별시 훈령 제 92 호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기 四二九四년 九월 일일

서울특별시장은

서울特別市專決規程

四二八一 一號

서울特別市訓令第五號

四二九四 四號

서울特別市訓令第六號

四二九四 九號

改正 서울特別市訓令第五號 四二九二 一〇號 서울特別市訓令第三號 四二九三 一七號

서울特別市訓令第六號

第一條 副市長 各局長 및 各課長은 二所管事務에 關하여

本規定에 依하여 專決한다 但 專決事項이 尤도 重要 또는 異

例에 屬하는 것으로 認定되는 것은 事前에 副市長은 市長의 各

局長은 副市長의 各課長은 主務局長의 決裁를 받아야 한다

第二條 專決事項으로서 他局課間에 關聯이 있는 것은 合議하

여야 하며 그 意見이 相違할 때에는 上司의 決裁를 받아야 한다

第三條 本規程에 依하여 專決을 委任 받은 자는 그 專決事項에

比하여 輕易한 事項을 專決한다

第四條 副市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一 五級國家公務員과 四級地方公務員의 任免

二、三級乙類國家公務員(課長除外)及二級地方公務員의 兼務發令

三、課長의 休暇願屆處理

四、三級乙類國家公務員及二級地方公務員의 管外出浪命

令

五、局課及 區의 定員配定

六、一件當二百萬圓以下의 補助金交付

七、二百萬圓以下의 豫備費支出

八、一件當一千萬圓以下의 工事執行

九、一件當二百萬圓以下의 物件賣買勞力의 供給 및 運搬

十、一件當五十萬圓以下의 物件賃貸借

十一、一件當十萬圓以下의 補償金支出

十二、一件當五百萬圓以下의 土地 및 建物賣買

十三、自動車交通事業計劃中運轉系運變更認可

十四、戶別稅五十等以下의 異議申請處理

十五、交通稅特行稅 및 漁業稅의 調定

十六、林野開墾許可外의 이따는 保安林解除

十七、商工會議所會費賦課率認可

十八、商工會議所議員選舉區選舉委員會委員委囑

十九、商工會議所議員總會諸議決事項報告

二十、畜產協同組合豫算承認

二十一、畜產資金融資推薦

二十二、政府管理糧穀搗精業許可

二十三、農業協同組合登錄

二十四、土石採取許可

二十五、延建坪三百坪以下階數三層以下의 建築許可

二十六、河川道路敷地占用許可

二十七、風致地區內行爲許可 但 建築行爲是除外한지

二十八、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에 依는 諸願屆의 處理外地

籍整理

二十九、私道築造許可

三十、社團 및 財團法人設立許可申請進達

三十一、社團 및 財團法人任員改選認可申請進達

三十二、飲食物製造營業許可

第五條 各局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一、定例 또는 輕易한 事項에 關한 調査 報告 通牒 公告

公示 照覆의 督促

二、輕易한 審議會 및 審議會에 附屬한 案件

三、事業實施計劃承認

四、輕易社法令解釋

五、局間事業協助事項

六、會議召開催

七、輕易社市長名義承認儀、證書及 人事作成

八、所屬分任出納公務員委任免

九、擔當事務承認

十、一件當百萬圓以下工事執行

十一、一件當五十萬圓以下物件買賣勞力供給及 運搬

十二、既定方針附隨乳諸事項

十三、一件當十萬圓以下物件貸借

十四、既定豫算區、洞事務所豫算配付

十五、所屬雇傭員委任免

十六、所屬課長主管內出張命令早退及 外出許可

十七、使用料及手數料調整

第六條 內務局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總務課所管

一、廳中令達

二、輕易社賞賜物件の交付

人事課所管

三、四級國家公務員及三級地方公務員以下の管外出張命

令

四、區課定員配定

五、四級國家公務員及三級地方公務員以下の兼務發令

市政課所管

六、洞事務所位置告示

七、訴訟代理人配定

八、徵集、召集及 身體檢査

九、射後行為許可

司計課所管

十、既定豫算配付

十一、歲出豫算日節流用

十二、五十萬圓以下の豫備費支出

運輸課所管

十三、自動車交通事業計劃中車輛用途、車輛構造、車輛

使用主及 停留所變更認可

十四、車庫設置認可

十五、自動車交通事業法違反者の運行停止處分

十六、自動車交通事業의 休止及廢止許可
第七條 財務局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會計課所管

- 一、工事都給、物件買賣勞力供給運搬及物件貸借契約
 - 二、確定借務의 支出決議
 - 三、電話架設
 - 四、市所屬自動車配置
 - 五、都給工事의 中止及解除命令
 - 六、確定及未確定債權讓渡承認
 - 七、契約期限延期承認
 - 八、雇傭員의 任免及賞罰
- 稅務課所管
- 九、戶別稅二十八等以下의 異議申請處理
- 管財課所管
- 十、公用地域第二種土地收得稅免稅申請
 - 十一、市有財產優先買受權賦與
 - 十二、市有財產繼續貸付及使用承認
 - 十三、借入財產의 更新契約
 - 十四、一件當百萬圓以下의 土地及建物의 買賣

十五、不用資材處分

第八條 產業局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商工課所管

- 一、度量衡器、計量器製作及修履許可申請進達
- 二、外資實需者認定
- 三、生産工場施設保有認定
- 四、中央都賣市場仲買代理人設定承認及施設物使用指定
- 五、中央都賣市場의 指定以外의 物品取扱及步履金支出承認
- 六、計量器隨時檢査
- 七、度量衡器及計量器販賣許可
- 八、度量衡器及計量器自治團束認可
- 九、家用電氣(第一種)工作物施設認可
- 十、日用品市場開場許可
- 十一、日用品市場開場許可更新
- 十二、日用品市場擴張及構造變更許可
- 十三、中央都賣市場仲買人許可
- 十四、設日用品市場內의 店舖其他施設變更許可
- 十五、石油類需給調整

- 十六、自動車用揮發油注油所許可更新
- 十七、石油販賣所許可更新

農林課所管

- 十八、肥料製造輸入至七賣買免許業者對申告處理
- 十九、農藥販賣業申告處理
- 二十、採種畜 採種田經營
- 二十一、屠殺禁止至七制限對對例外屠殺許可
- 二十二、獸醫師免許申請進達
- 二十三、家畜飼料需給
- 二十四、家畜病院申告處理
- 二十五、償還穀收納
- 二十六、水利組合長起債借入對關對工事既成高證明
- 二十七、肥料製造、輸入、賣買、營業狀況變更認可
- 二十八、地價證券發給
- 二十九、傳染病斃死家畜燒却至七埋却
- 三十、種畜斃死
- 三十一、農地代價一時償還申請處理
- 三十二、農地代價償還減免申請具申
- 三十三、家畜防疫實施

- 三十四、家畜市場內生舍飼料調理場運營
- 三十三、五自業者指定
- 三十六、不正產物處分
- 三十七、農地爭訟受行者指定
- 三十八、區域地委員會委員選舉
- 三十九、有毒性農藥販賣許可

- 四十、土石採取延期許可
- 四十一、牛乳處理場設置許可
- 四十二、種畜指定
- 四十三、認許農地保留
- 農林課所管
- 四十四、管理糧穀保管倉庫指定及等級査定
- 四十五、管理糧穀供給契約對至七低價權設定及取消
- 四十六、管理糧穀加工原料對配定及精算
- 四十七、管理糧穀加工製品包裝配定
- 四十八、石炭配定
- 四十九、管理糧穀市內運搬章程策定

- 第九條 建設局長은 다음과 같은 事項을 專決한다
- 管理課所管

- 一、都給工事의 中止解除決定
- 二、工事施行에 따르는 支障電柱、瓦斯管 및 電信、電話線의 移轉手續
- 三、既定計劃에 依한 用地買受手續
- 四、都給工事의 既成部分에 竣功檢査
- 五、疎開地 替費地 繼續貸付許可
- 六、空閑地 및 公園用地 繼續貸付許可
- 七、關係者 協議出願에 依한 換地豫定指定、變更 또는 誤謬를 因한 更正處理
- 八、建築代書業許可
- 九、道路掘鑿許可
- 十、街路樹剪枝承認
- 十一、河川 및 道路敷地 繼續占用許可
- 十二、都市計劃課所管
- 十三、延建坪百五十坪 階數三層以下의 建築許可
- 十四、下水課所管
- 十五、既設下水道施設의 密附採納
- 十六、下水道都給工事中의 解除
- 十七、下水道工事에 따르는 支障電柱、瓦斯管 및 電信、電話線의 移轉手續

電話線의 移轉手續

第十條 水道局長은 다음의 事項을 專決한다

- 一、上水道都給工事中의 解除
- 二、給水使用料 異議申請處理
- 三、給水使用料 十萬圓以下의 減額決定
- 四、上水道工事に 따르는 支障電柱、瓦斯管 및 電信、電話線의 移轉手續
- 五、上水道決定計劃에 依한 用地買受手續
- 六、水道料 滯納者 停水處分 및 解除
- 七、水道給水 種別變更
- 八、給水使用料 調定決議 및 水道關係 負擔金 歲外收入 調定決議
- 九、屋內外 給水 特別裝置許可
- 十、代用線(給水管) 工事許可
- 十一、制收兼 設置承認
- 十二、既設配水管의 密附採納

第十一條 社會局長以下之事項을 專決한다

社會課所管

- 一、公益典當舖 流質物賣却處分
- 二、勸勞基準法에 依한 各種認可 및 各種申請申告進達
- 三、迷兒、孤兒、棄兒、浮浪兒、老老者 및 不具者收容
- 四、緊急救護(天災、火災)
- 五、厚生施設 確認 願書 處理
- 住宅課所管
 - 六、市營住宅 保存 및 移轉登記
 - 七、市營住宅 根柢 當權 設定 및 抹消
 - 八、市營住宅 分讓 金 測定 및 償還
 - 九、市營住宅 增築 承認 및 分讓 契約 更新
 - 十、市營住宅 組合 組長 및 更迭 計畫 地 變更 承認
 - 十一、既定 計劃에 依한 市營住宅 建設 資金 貸出
- 衛生課所管
 - 十二、各種 衛生 關係 營業 業態 等級 査定
 - 十三、既定 計劃에 依한 防空 實施
 - 十四、飲食物 製造 許可에 對한 名儀 變更 및 場所 移轉 許可
 - 十五、衛生 上 有한 飲食物 品 의 廢棄

六五三四

十六 人工 市 販賣 使用 許可 申請 進達

十七 檢診 區域 指定

十八 傳染 病 豫防 措置 및 醫藥 士 者 勤員

醫藥課所管

- 十九 醫務 室 設置 許可 申請 進達
 - 二十 醫藥 業者 開設 申告 證 發給
 - 二十一 醫藥 業者 免許 申請 進達
 - 二十二 醫藥 業者 國家 試驗 願 進達
 - 二十三 藥局 開設 登錄 證 發給
 - 二十四 藥劑 販賣 者 免許 更新 許可
 - 二十五 藥劑 및 限外 藥劑 製造 劑 및 小分 許可 申請 進達
 - 二十六 藥劑 販賣 者 免許 登錄 事項 變更 申請 進達
 - 二十七 國定 處方 書에 依한 醫藥 品 製造 業 登錄 申請 進達
 - 二十八 國定 處方 書 以外 的 醫藥 品 醫藥 用 具 衛生 材料 및 化粧品 製造 許可 申請 進達
- 第十二條 警察局長은 다음 的 事項을 專決한다
- 警務課所管
- 一 警査 至 七 消防 士 以下 的 任 免
 - 二 警査 至 七 消防 士 以下 的 獎勵 配置

- 三、總督、警監、警衛級の出張命令及勅令
- 四、警衛級以下の懲戒及再審
- 五、警察公報發行
- 六、殉職斗傷撲警察官及消防官補償
- 七、警察記事處理
- 八、警察豫算執行
- 九、警察行政に必要な軍剩餘物資の購買申請
- 十、幹部級非行に對し投書陣情書認知事件の處理
- 十一、警察車輛及消防車輛の管理檢査
- 保安課所管
 - 十二、火藥類取扱免許斗試驗
 - 十三、與信營業許可
 - 十四、典當舖營業許可
 - 十五、火藥類貯藏所設置許可
 - 十六、鐵銃所持許可
 - 十七、原動機設置及檢査
- 交通課所管
 - 十八、自動車登録斗同使用主變更登録
 - 十九、車輛檢査

- 二十、車輛輸入
- 二十一、車輛行政處分及再審
- 二十二、車輛組立承認
- 二十三、自動車運轉免許交付
- 二十四、交通標識施設
- 警備課所管
 - 二十五、義勇消防隊運營
 - 二十六、防空警報通信
 - 二十七、引火質物貯藏團束
 - 二十八、民防空指導訓練
 - 二十九、危險物製造等設置許可
- 通信課所管
 - 三十、警察通信警備電話設置廢止移轉
- 檢査課所管
 - 三十一、重要犯罪檢査事件
 - 三十二、重要犯罪事件送致
 - 三十三、重要告訴檢査事件
- 第十三條 各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 一、所屬職員의事務分掌(主務者七除外)

- 二、所屬職員之管內出張時、時間外勤務命令
- 三、所屬職員之早退、外出許可
- 四、主管事項之對上關係者存案、書類提出要求
- 五、配給物資傳票發行
- 六、輕易社事項之通知、督促、照覆
- 七、輕易社指示、建議
- 八、輕易社事項之證明
- 九、定例至七輕易社報告處理
- 十、所屬金品出納命令
- 十一、各種公費關覽額之處理
- 十二、各種證書之再交付及更新交付
- 十三、刑行物配付
- 十四、行政事務處理簡行命令依其延期通知
- 十五、設計範圍內之職工、夫人、雇傭
- 十六、工事中命令之監督
- 十七、法例依其陳情書之對其回答
- 十八、補助金至七交付金之請求
- 十九、既定計劃之依其物資配定

- 二十一、請願狀補正提出
- 二十二、所有權移讓登記
- 二十三、輕易社統計之資料蒐集調查、作成
- 第十四條 總務課長命令之事項之專決事項
 - 一、當直勤務命令
 - 二、當直勤務狀況報告處理
 - 三、市立運動場使用許可
 - 四、時考一覽資料蒐集
- 第十五條 人事課長命令之事項之專決事項
 - 一、人事命令通知
 - 二、公務員請假公務員之對其證明發行
 - 三、出缺公務員之任命
 - 四、課長以外職員之休職處理
 - 五、公務員之任用手續之三三照會
- 第十六條 市政課長命令之事項之專決事項
 - 一、在兒之對其後見人指定
 - 二、洞職員人事異動事項處理
 - 三、三籍寄留等諸證明件數報告處理

四、兵事に關한證明 및 通報

五、兵役忌避者告發

第十七條 可計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二百萬圓以下の隨時豫算配付

二、五十萬圓以下の經常的維持管理費用의支出

三、豫算戻入

第十八條 公報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印刷所登錄

二、서울市報發刊

第十九條 運輸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自動車交通業者의諸報告 및 屈出書類의處理

二、營業用自動車運行證發給

三、營業用自動車油類配給要請

四、運輸事業에關한各種證明

五、自動車交通事業開始認可

第二十條 會計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一件當豫定價格百萬圓以下の工事都給契約

二、一件當豫定價格二十五萬圓以下の物件買買勞力의供

給 및 運搬契約

三、確定負債一件當五十萬圓以下の支出決議

四、職員報酬의支給決議

五、竣工保證金瑕疵保證金의出納決議

六、物品出納命令

七、市外電話使用

八、雇傭員採用의身元調査及服務

九、廳內關係

第二十一條 稅務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課稅資料調査

二、滯納處分에依한差押 및 公賣通知外登記囑託

三、過誤納整理

四、滯納處分에依한差押解除通知

第二十二條 管財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登記簿謄本閱覽申請

二、土地臺帳謄本交付申請

三、地籍圖林野圖交付申請

四、財產賣却代 및 貸貸料의督促

五、不動產時價鑑定依頼

六、既定方針에 依한 計畫의 押下 貨貸 및 使用承認申請의 却下

第二十三條 商工課長은 다음 事項을 專決한다

一、定額管理修履檢査 및 證明

二、生産工場登錄 및 證明

第二十四條 農林課長은 다음 事項을 專決한다

一、販賣肥料見本提出

二、既定計劃에 依한 家畜防疫實施

三、家畜傳染病發生措置

第二十五條 農林課長은 다음 事項을 專決한다

一、管理糧穀引受渡指令

二、管理糧穀入出單月報處理

三、管理糧穀保管斗諸件 業의 確認

四、管理糧穀操作指示

五、管理糧穀發送報告 및 確認

六、管理糧穀代金納付告知

七、管理糧穀副產物賣渡通知 및 引受指令

第二十六條 管理課長은 다음 事項을 專決한다

一、都給業者出入證明

二、建設法에 依한 定規의 申請報告 및 圖出書類의 處理

第二十七條 土木課長은 所屬工場生産產品供給에 關한 事項을 專決한다

第二十八條 都市計劃課長은 다음 事項을 專決한다

一、都市計劃事業으로 因한 移轉處理

二、道路溝渠 및 建築線의 境界明示 및 換地豫定地指示

測量

三、土地所有者類에 依한 換地豫定地變更 및 從前地分割

四、私道築造許可에 對한 工事竣功期間延期許可

五、建築許可延期

六、建築法에 依한 各種申告 및 報告의 處理

七、土地區劃整理에 依한 土地分割申告處理

八、都市計劃事業 및 建築許可에 關한 諸證明

第二十九條 下水課長은 다음 事項을 專決한다

一、下水道關係工事의 既成部分斗竣功의 檢査員指定

二、私設下水處理場의 設置承認

三、所屬工場生産產品供給指示書發給

四、下水道關係諸證明

第三十條 義務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給水使用料 및 手數料의 測定通知

二、上水道關係諸證明

第三十一條 施設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上水道關係工事의 既成部分과 竣功의 檢査員指定

二、各水源池에 對한 電氣의 配定 및 調節

第三十二條 給水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五十耗 以下의 給水工事許可

二、水道工事를 爲한 小地區內의 一時給水停止

三、量水器의 異常 또는 給水用具의 故障 其他 原因한 水量의

認定

四、私設消火栓演習使用

第三十三條 社會課長은 要救護者의 施設收容依頼에 關한 事

項을專決한다

第三十四條 住宅課長은 市營住宅分讓契約에 關한 證明事項

을專決한다

第三十五條 婦女課長은 救護를 要하는 婦女子收容에 關한 事

項을專決한다

第三十六條 衛生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浮浪癩患者 摘發移送

二、第一種傳染病發生措施

三、傳染病患者屍體埋葬許可

四、各種營業許可證寫本交付

第三十七條 醫藥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麻藥購入 및 販賣書發付

二、醫師、齒科醫師의 專門科目 標榜 및 許可申請進達

三、醫療業 및 醫療類似業廢業申告處理

四、醫療業者醫籍抹消進達

五、要救護患者取扱

第三十八條 警務課長은 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局內警察官의 常直勤務命令

二、監督巡視命令

三、巡備員의 任免

四、巡警級の 配置

五、警察職員採用에 따른 身分照會

六、殉職傷病警察官遺家扶證明發給

- 七、警查以下職員의出張命令과勤怠
 - 八、警察官敎養方法 및 敎養時間의配定
 - 九、警查以下의非行事件處理
 - 十、警察歲出豫算決議
 - 十一、備品 및 消耗品出納
 - 十二、車輛用品出納
 - 十三、警察車輛配車
 - 十四、給貸與品保管轉換
 - 十五、給貸與品出納
- 第三十九條 保安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 一、廣告物貼付 및 揭示의承認
 - 二、原動機繼續檢査
 - 三、輕微한保安情報
 - 四、行政手配
 - 五、銃他所持者所持記載事項變更 및 交換更新屆
 - 六、典當舖開業認可 및 開業屆
 - 七、原動機取扱主任選任屆
- 第四十條 交通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 一、自動車繼續檢査
 - 二、自動車檢査證再交付 및 記載事項變更申請과返納處理
 - 三、車輛在籍證明
 - 四、自動車運轉免許의更新 및 再交付
 - 五、就業免許證交付 및 更新
 - 六、違反車輛行政處分(再審除外)
 - 七、車輛廢車證明
 - 八、自動車使用主變更屆處理
 - 九、輕微한交通事故處理
 - 十、自動車運轉免許行政處分
 - 十一、車輛轉出 및 證明
 - 十二、各種事實照會
 - 十三、自動車未登錄殘餘證明
 - 十四、自動車構造變更屆
- 第四十一條 警備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 一、防空施設의指導
 - 二、騎馬警察官의動員
 - 三、消防職員의身分照會

四、消防職員 및 義勇消防隊員身分證明書發給

五、消防車輛整備

六、防火施設의指導

七、消防通信施設의整備

八、警察銃器彈藥保管配置

九、消防員의敎養

第四十二條 搜查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輕微한搜查情報處理

二、諸般犯罪手配 및 解除

三、輕微한犯罪報告

四、前科者 및 刑事要視察人動向調査

五、指紋寫眞 및 證據品鑑識

六、輕微한犯罪事件送致 및 移牒

七、拘束通知

八、證據蒐集을爲한諸般照會

九、搜查關係者召喚 및 書類提出要求

十、搜查情報費出納

第四十三條 情報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輕微한搜查情報處理

二、輕微한犯罪事件送致 및 移牒

三、前科者要視察人動向調査

四、輕微한查察犯罪의搜查 및 手配解除

五、輕微한集會願屆處理

六、輕微한身元調査 및 照會

七、查察情報費出納

第四十四條 通信課長은다음의事項을專決한다

一、警備通信資材出納保管

二、交換員敎養

三、交換員(補助員)任免

四、輕易한局內有無線通信施設

五、不正電力使用團束處理

附 則

本規定은檀紀四二九四年九月一日부터施行한다

檀紀四二九四年四月四日字서을特別市訓令第八九號가이

를廢止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六三一一호

도량형령 시행 칙 제五三호의 규정의 의하면 금년도 도량형기 및 기량기 제1급취제를 집행하나 업무상
거리와 증명에 사용하며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소위하는 도량형기 및 기량기는 다음에 의하면 검사관
발아야 한다

단기四一九四년八月一日

서울특별시공 은 태 일

一. 검사일시 및 수검구역

종 구	검 사 일 시	수 검 장 소	수 검 구 역	비 고
"	八월 四일 자○시	홍천 등사부소	홍천동, 대곡동, 수남동	(반) (검사)
"	八월 五일	북창 등사부소	북창 등사부소	A 반
"	八월 七일	남대문시장사무소	남대문시장일대	"
"	八월 八일	"	"	"
"	八월 九일	도동사무소	도동 등자동	"

<p>종로구</p>	<p>중구</p>
<p>八월二二일 자 八월二三일 자 八월二四일 자 八월二五일 자 八월二六일 자 八월二八일 자 八월二九일 자</p>	<p>八월一〇일 자 八월一一일 자 八월一二일 자 八월一四일 자 八월一六일 자 八월一七일 자 八월一八일 자 八월一九일 자 八월二一일 자</p>
<p>청송동사무소 매동사무소 중앙동사무소 종각동사무소 별궁동사무소 제동사무소 담동사무소</p>	<p>회현一가동사무소 충무로一, 二가동사무소 남곡동사무소 청계동사무소 을지로二, 三가동사무소 충인동사무소 산림동사무소 낙선동사무소 훈린동사무소</p>
<p>자하동, 청송동, 인왕동, 누각동, 백송동 매동, 사직동, 백송동, 종교동 중앙동, 신문동, 광교동 종각동, 대사동 수전동, 전훈동, 밀궁동, 태화동 백복동, 지동, 일석동 돈화문동, 남동, 은덕동</p>	<p>자우시장일대, 회현一가동, 회현一가二동 회현二, 三가동 충무로一, 二가동, 명동, 남산동 남곡동, 동원동, 영회동 덕수동, 청계동 을지로二, 三가동 인현一가동, 충인동, 인현시장일대 산림동, 훈도동, 우교동 낙선동, 아현동, 장충一가동, 장충二가동, 쌍림동 을지로四가동, 훈린동, 을지로六, 七가동, 광희一가동, 광희二가동</p>
<p>삼반</p>	<p>삼반</p>

六五四三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八월三十一日 子四〇시	八월一四일 子四〇시 八월一六일 八월一七일 八월一八일 八월一九일 八월二一日	八월五일 子四〇시 八월七日 八월八일 八월九일 八월一〇일 八월一一日 八월一二일
아현계 一 동사무소	후암시 장 조합 청파 二 동사무소 용문동 사무소 한강로 二 가 二 동사무소 신용산시 장 조합 이태원시 장 조합 보광동 사무소	영등포공설시 장 당산계 三 동사무소 문래계 二 동사무소 신광동 사무소 노량진동 사무소 본동 사무소 혹석시 장 사무소
아현계 一 동, 아현계 二 동, 아현계 三 동	후암계 一, 二 동, 잠월동, 남영동, 용산동 一, 二 동, 청파 一, 二, 三 가동, 원효로 一 가동, 서계동, 원동, 원신동, 심원동, 용문동, 신원동, 창동, 도	영등포공설시 장 일대 영등포계 五 동, 당산계 一 동, 당산계 二, 三, 四 동, 양평동계 二 동 문래계 一 동, 문래계 二 동, 양평계 一 동, 구로동, 도림계 二 동 신길동, 신광동, 신공동, 신남동, 대림동, 도림계 一 동, 대방동 상도계 一 동, 상도계 二 동, 노량진동 노량진시 장 일대, 본동 혹석계 一 동, 계 二 동, 계 三 동
B반	B반	B반

六五四五

<p>마포구</p>	<p>八월二四일 辰^{一〇}시 八월二五일 八월二六일 八월二八일 八월二九일</p>	<p>중곡제^二동사무소 신광제^二동사무소 도화제^二동사무소 대우동사무소 서광동사무소</p>	<p>양곡제^二동사무소 중곡제^二동사무소 신광제^二동사무소 도화제^二동사무소 대우동사무소 서광동사무소</p>	<p>B</p>
<p>서대문구</p>	<p>八월三〇일 辰^{一〇}시 八월三一일 九월一日 九월二일 九월四일 九월五日 九월六일 九월七日</p>	<p>구청구내 연천동사무소 영천동사무소 관동시장사무소 은평출강소 홍은동사무소 북아현^二동사무소 대신동사무소</p>	<p>서천동, 순화동, 함미동, 충렬동, 만리^一동, 만리^二동 연천동, 홍천로^一, ^二가동, 충정로^三가동, 감일동, 석림동 북아현^一, ^二, ^三동 관동시장일대 대신동, 옥신동, 응각동, 수색동, 신암동, 홍제동, 남천동, 구계동, 홍은동</p>	<p>B</p>
<p>성북구</p>	<p>九월八일 辰^{一〇}시 九월九일</p>	<p>삼선^一동사무소</p>	<p>성북^一동, 성북^二동, 동소문동, 삼선^一동, 삼선^二동, 삼선^三동</p>	<p>B</p>
<p>남산동사무소</p>	<p>동선동, 남산동, 서암동</p>	<p>동선동, 남산동, 서선동, 성화동, 동암동</p>	<p>동선동, 남산동, 서선동, 성화동, 동암동</p>	<p>B</p>

영등포구	九월二十八일	자	○시	시	구	동	장
九월	九월二十九일	九월	九월	九월	九월	九월	九월
九월	九월	九월	九월	九월	九월	九월	九월

- 二、다음에 해당하는 도량형기는 별도로 검사한다
1.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도량형기
 2. 토지 또는 건물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도량형기
 3. 운반하기 곤란한 장치로서 설치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도량형기
 4. 금속제 또는 목재 이외의 랑기
 5. 칭량기 1만분의 1의 측정 또는 1밀리그램 이하의 중량을 감하는 천칭
- 조사 방법
- 一、각구척장은 관내의 수검대상자를 검사일 전날까지
- 二、별도ச்ச용지에 의하여 조사키로함
- 조사 방법

東信化學 大韓인크 大同纖維 京博紡織
 東鮮製粉 泰昌紡織 韓國金屬 金剛운탄
 東亞染織 韓一絲物 東國製網
 永登浦伸鐵 韓國金屬 三成機械 三和鐵工
 三共工作所 東洋製紙 豐韓產業 天一穀產
 東洋食品 大韓糖鐵 極東煉炭
 大建化成 亞洲伸鐵 華勝鑄物 西光酒造
 東亞다이오 興和工作 會同化學 韓國絹紡
 太平産業 受教油脂 三網製鐵 中央食品
 大韓重機 韓國다이오 天一産業

B 반 A 반 B 반 A 반

(-) 각종 당대직원을 수검조사원으로 정하고 조사원들은 각구척장이 발급함

제 호	도량형기 수검자 조사원증	구척장
지	년	월
자	년	월
지	년	월
자	년	월

구척장 甲

3cm

6cm

- (一) 조사원은 수검자명부 및 동명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제란후 조사사부처대에 신속정확을 기할것
- (二) 조사원은 해당동관내의 관공서를 제외한 전반에 걸쳐 업무상의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거 위하여 소유하는 도량형기를 조사하여 별도도량형기 수검자명부 및 동수검명명서의 해당란에 기재하는 등서(단 조사사항의 二에 의한 기물에 대하여는 조사후 불제출사항란에 필히 기입할것) 수검명명서는 본인에게 교부하고 수검자명부의 성명란에 기물소유 및 명명서 받은것을 확언하기 위하여 수명인을 받을것
- (三) 조사원은 수검자명부를 작성완료하면 검사일전일까지 해당검사장에 부위 제출할것
- (四) 조사책임원은 해당검사일에 탈검자가 없도록 검사소와 연락하여 독려할것
- (五) 조사원은 하기 장소의 조사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음으로 특히 유의하여 철저히 조사할것
(밤은탕, 약부, 약국, 한약) 양복점, 양장점, 각종교물상, 목욕탕, 각종병원, 직물양장, 제과양장, 각종

- 제류, 제과양장, 장미소)
- (六) 조사원은 조사완료후 수검자명부표지 해당란에 근무부서 및 직성명기재 날인할것
- 二, 검사장의 설비
 - 각구에서는 조사된 검사항을 사전에 교섭하여 사문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등서 『도량형기검사장』이라는 도서를 하고 검사에 필요한 시설(검사대)보동책상(三대 의자五개)를 검사개시전까지 완비할것
- 三, 검사원의동원 및 방편성
 - 본청직원 (상용과) 二명 (A, B반각 一명)
 - 구청직원 (총무과) 一명 (해당구 一명)
 - 경찰서직원 (보안제) 一명 (해당관내서 一명)
 - 상용부중·도량형소직원 (A, B반) 각 二명
- 검사방편성
 - 二반 (A, B) 반은 도편성하고 A반 4개구 B반 5개구를 담당하고 각검사반은 해당구형 총무과의 九시가지 집합할것

다음

種別	起點	終點	主經 過地	幅員	延長	面積	摘要
小路	忠正路三가 一六七	忠正路三가 一六六의三		四米	一七米		

●서울특별시고사제六三二호

삼립령제三조 및 동령시행규칙제九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을 다음과같이 해제한다

단기四二九四년八月二일

서울특별시장

기

소제지	보안림	지번	면적	해제연적	소유권	소유자	소재유계	비고
구제지	종류	지목	면적	해제연적	소유권	소유자	소재유계	비고
용산	보안림	산	임야	二정	구유		대산	
이태원	종류	의五	三정	七〇〇				
	종류	의五	五〇〇					

●서울특별시고사제六三四호

삼립령제三조 및 동령시행규칙제九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을 다음과같이 해제한다

단기四二九四년八月二일

도시계획과 및 중구청 건설과에 비쳐하여 관제인의 증란에 응한다

단기四二九四년八月十八日

서울특별시장

다 음

종 별	기 점	종점	주 경 과 지	국 원	면	장	면 적	적 요
소 로	중구저동二가六七-三도 중구저동二가六六-三도			메-터	一五〇、五메-터			

●서울특별시고사제六三七호

단기四二九四년八月十九日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단기四二九四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제三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같이 고시한다

단기四二九四년八月十九日

서울특별시장

다 음

은

대

일

회 계 별	추 가 경 정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금 회 추 가 경 정 액
일 반 회 계	一八、七〇二、〇五〇、六〇〇	一五、九九一、六〇八、四〇〇	二、七二〇、四四二、二〇〇

수 도의 유물	六,五三三,九三〇,八〇〇	六,三四五,九三〇,八〇〇	二〇〇,〇〇〇,〇〇〇
경상도의 유물	五二,六七八,四〇〇	五二,六七八,四〇〇	
충청도의 유물	九〇,一七四,三〇〇	八八,五五〇,一〇〇	一,六二四,二〇〇
호남도의 유물	二,〇七三,一七四,四〇〇	八六六,三六四,二〇〇	一,二〇六,八一〇,二〇〇
전라도의 유물	一,五三二,一九〇,八〇〇	二,三九二,一九〇,八〇〇	一四〇,〇〇〇,〇〇〇
경기도의 유물	九八九,九九六,八〇〇	九八九,九九六,八〇〇	
전라북도의 유물	八〇四,三〇一,七〇〇	七三〇,二五五,六〇〇	七四,〇四六,一〇〇
충청북도의 유물	一三,〇八八,四四七,二〇〇	一一,四六五,九六六,七〇〇	一,六二二,四八〇,五〇〇
경기도의 유물	三二,七九〇,四九七,八〇〇	二七,四五七,五七五,一〇〇	四,三三二,九二二,七〇〇

六五四

● 서울특별시고지제六三八호
삼립명제三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九조의규정의의하여
보아림을 다음과같이해제한다.

단기四二九四년八月二十九日

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

기

구	중	중	용산	제
동	회현	예장	후암	
보안림	보안림	보안림	보안림	
지	산	산	산	삼점지
번	一의二	五의六	一의二	
지목	임야	임야	임야	
보안림면적	一一〇六〇〇 ^정	四八六一一四 ^정	一六六一〇〇 ^정	七七二八一四
해제면적	二 ^정	三 ^정	二 ^정	二
소유별	국유	국유	국유	七五〇
소유자				
사해유제	개간	개간	개간	
비고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四〇七호

난민주택 입주자 신일공고

무주택 난민 또는 영세민으로서 차력만으로는 건설

할수없는 시민에게 대지를 알선하고 자재를 두상공급하여 다음과같이 주택을 건설키로 하였으니 희망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십시오
다
을

- 一. 건설호수 五〇호
- 二. 건설지 성북구미아동산一一一번지

三, 주택구조 세면, 벽돌 기와집 건경六, 七경 二호

연립

四, 무상자제지급(호당)

가, 외원자제: 복제 一, 〇〇〇〇B/F 양회 一호/T

(二三호) 못 二〇L/B

나, 국내자제: 六분판자 一〇평 다의켈트 二二경 양회

一〇호 석회 一〇호 유리六〇경, 학판 一〇매

五, 입주대상자의 자격 및 신청

가, 무주택난민 또는 영취민으로서 본공사를 성공

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음경비의 및 건축비

의 일부를 입주신청과 동시에 현금 또는 시중

은행발행의 보증수표로 납부 각입하여야 한다

나, 적립금

구분 정지비 건축비 회

적립금 五〇,〇〇〇 五〇,〇〇〇 一〇〇,〇〇〇

다, 본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립의욕이 왕성한

며 주택과 기타 부대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자

신의 노동력과 부족자제를 제공할 능력과 그의

가 있는지.

다, 신청된 입주 대상자가 시중에 관한 다국의 지

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신청을 무효로 한다

마, 호별세 七등 이하자에 한한다

六, 입주서류

거주증명서(기류등, 초본)

두주택 증명서

호별세등급 증명서

사업계획서

※이상 제출명은 본건 종료후 발행한것에 한하여

접수함

七, 접수처: 성북구청 사회과

八, 접수기간

자, 八월一六일

지, 八월一九일 四일간

九, 신청서는 성북구청 사회과에서 배부한다

一〇, 입주자결정

자격요건을 구비한자를 신청순으로 결정한다

※신청기간이 만료되기전이라도 신청자가 예적인원

에 달하였을 경우에는 접수를 마감한다

一一、 기타 상세한것은 정부구청 사회과에 문의 하
시암
위와같이 공고함

단기四二九四년八月八일

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

●서울特別市公告第四〇八號

不動産賣却入札公告

- 一、 不動産表示 (財産目錄과같은)
- 二、 入札日時 檀紀四二九四年八月三十一日午前十時
- 三、 入札場所 常市財務局管財課
- 四、 入札方法 一般競争入札에依함

但 財産目錄中 適法으로 貸付받은
者및 常時가 集團移住 承認한者에
對하여는 優先買收權을 認定함

五、 入札登錄 檀紀四二九四年八月二十六日午前十二時

까지 入札登錄申請書를 常市管財課
에 提出함

六、 優先買收權者 入札登錄申請書와 同時 別途優先買

收願을 登錄磨勘日까지 提出함
但 優先買收權者가 入札에 參加하
지 아니할때에는 優先買收權을 拋
棄한것으로 看做함

七、 入札保證金 入札金額一割以上에 現金 또는 市中
銀行의 保證手票와 入札保證金の 三
分以上에 該當하는 國債消北畢證을
納付함

八、 賣買契約 및 代金納付方法
落札者는 入札日로부터 五日以內에
納稅畢證을 添付하여 二割以上의 該
當契約金納付와 同時賣買契約을 締
結하고 殘金을 契約日로부터 三十日
以內에 納付함

九、 地上物撤去 賣却後 地上物撤去 補償明渡에 關
하여는 一切買收者의 責任으로함

一〇、 其他詳細한 事項은 常市管財課에 問議함
右와같이 公告함

檀紀四二九四年八月十八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서울特別市公告第四〇九號

今般 本市所有財産中 다음에 該當하는 財産을 無償
占有 또는 使用하고 있는 者에게 合法的으로 同時에 貸
付키로함과 아울러 此後賣却時에는 이에 對한 權限
을 賦與하는 惠澤을 베풀기로 되었으니 該當市民은
마침없이 期日內에 所定樣式의 依據申請하시기 바랍
다 음

一 貸付를 받을수 있는 財産

가 獨立된 一筆當 十坪未滿의 市有地

나 登記簿上 地目이 道路이나 埋藏地化境 市有地

但 都市計劃線에 低觸되지 않을것

二 貸付할수 없는財産

ㄱ 一〇坪以上の 市有地 ㄴ 葬費地 ㄷ 土地區劃

整理地區 ㄹ 宅地造成地區 ㄹ 道路殘地 ㅂ 保留

地 ㅅ 溜水池 ㅇ 疎開地 ㅈ 溝渠

三 具備書類(樣式)

ㄱ 市有地貸付申請書 ㄴ 地籍圖四通 ㄷ 附近略圖

一通 ㄹ 隣佑證明一通

四 申請期間

自權紀四二九四年 九月一日

至權紀四二九四年 一〇月末日

五 其他

仔細한것은 서울特別市財務局管財課에 問議할것

權紀四二九四年八月二十八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서울特別市公告第四一〇號

自動車持込制止場에 關한 公告

交通部 公告第六五四號 및 第一一一號에 依하여 當市

管下 業者 및 車主諸位에게서는 既히 本趣旨을 周知

하고 져실줄 意料되는데 바이오나 아직 檢問에서는 車

主申告한하면 別途手續없이 곧 單一免許가 附與되는

것으로 誤認되고 있는바 다음事項을 必히 履行할실

다 음

一 既存業者의 實態報告書提出은 오는八月三一日까지임

二 車主로서는 다음 두가지方法이 있음

가 車主가 既存業者에게 自動車를 賣却하거나 備

車하거나 또는 現物出賃하여 其費用 經營하는方法

나. 오는 九月一日부터 車主끼리 勸處 商法에 의한

會社를 創立하여 新規免許를 받아 事業을 經營

하는 方法

車主는 以上の 두가지 方法中 하나를 必히決定

하여야 합니다

三、市內에 쓰릿 합승택시는 九月一日부터 當市가 지역

한 方向板을 제시치 않은 車輛은 運行停止處分을

당행한다

禮紀四二九四年八月二十九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서울特別市公告第四一一號

不動産賣却入札公告

一、不動産表示 (財産目錄과 같음)

二、入札日時 禮紀四二九四年九月十一日午前十時

三、入札場所 當市財務局、管財課

四、入札方法 一般競争入札에 依함

但 財産目錄中 適法으로 貸付받은者

및 當市가 集團移住承認한者에 對하

여는 優先買收權을 認定함

五、入札登錄 禮紀四二九四年九月七日 午後三時까지

入札登錄 申請書를 當市管財課에 提

出함

六、優先買收權者 入札登錄申請書와 同時 別途優先買收

願을 登錄磨勘일까지 提出함

七、但 優先買收權者가 入札에 參加하지아

니한때에는 優先買收權을 拋棄한것

으로 看做함

八、入札保證金 入札金額一割以上에 現金또는 市中銀

行의 保證手票와 入札保證金의 三分

以上에 該當하는 國債消化畢證을 納

付함

八、賣買契約 및 代金納付法 落札者는 入札日로부터 五日以內에 納

稅畢證을 添付하여 二割以上의 該當

契約金納付와 同時賣買契約을 締結하

고 殘金을 契約日로부터 三十日以內에

納付함

九、地上物撤去 賣却後 地上物撤去 補償明渡에 關하

여는 一切買收者의 責任으로함
一〇. 其他 詳細한 事項은 當市官財課에 問議한
右와같이公告함

檀紀四二九四年八月二十九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特別市公告第四一二號

無許可建築物 및 違法建築物에 對한 警告文

五. 一六革命課業을 完遂하기 爲하여 서울市民이 總
力을 傾注하고 있음은 참으로 慶賀스러운 일입니
다 그러나 이 瞬間에도 一部 知覺없는분들은 市內到
處에서 無許可 및 違法建築을 敢行하고 있음은 首都
서울의 發展과 市民의 安寧秩序를 害치는것으로 이
는 革命課業遂行에 逆行되는處事로 甚히 遺憾된일이
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二五〇萬全市民이 一致團結
하여 不正과 舊惡을 一掃하여야 할 이마당에 이와같
은 違法行爲는 到底히 容納할수없는 處事임으로 此
際에 이를 拔本刷新하고 違法精神을 昂揚함으로써 單
이 明朗한 首都서울의 發展을 이룩하게 되는것임

니다

다라서 市內到處에 建立되고있는 無許可建築은 勿論
違法建築物에 이르기까지 當市의方針에따라 漸次的으로
撤去또는 除却을 斷行할것임과 撤去斷行에 併行
하여 建築許可를 받은者中에도 違法工事를한 建築物
에 對하여는 早速한 時日內에 設計變更許可를 받도
록 할것이며 設計變更이 不可能한 違法建築物에 對하
여는 理由如何를 莫論하고 可惜없이 撤去 및 除却을
斷行 할것을 警告하는 바입니다

市民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와같은 無許可建築物
로 因하여 우리의首都서울의 諸般都市土木事業이 適
期에 施行되지 못하고 있다는點을 特히 銘心하여 앞
으로는 當局의 意圖하는바를 充分諒察하시고 首都서
울의 繁榮과發展을 爲하여 積極적인 協助가 있기를
要望하는 바입니다

檀紀四二九四年八月 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서울특별시공고제四一三호

결음택지조선지구매과처분

- 一, 부동산의 표시 다음 제산목록과 같음
- 二, 입찰 실시 시기 단기四二九四년九월一八일一〇시
- 三, 입찰 장소 서울특별시 전설국판리과
- 四, 입찰 방법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 五, 입찰 등록 단기四二九四년九월一六일 하오五시까지 입찰등록 신청서를 당시 판리과에 제출할것
- 六, 입찰 보증금 입찰금액一환이상의 현금또는 시중은행의 보증수표와 입찰보증금三부(分)이상에 해당하는 국채소화필증을 납부함
- 七, 매매계약 및 대금납부방법 낙찰자는 입찰일로부터 五일이내에 납세필증을 첨부하여 二환이상 해당의 계약금 납부와동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계약일로부터 三〇일 이내에 납부함
- 八, 기타 상세한것은 당시판리과에 문의할것

단기四二九四년八월三十一일		사 령		서울특별시장	
●단기四二九四년七월十八일		동대문구점전설국도시계획과		지방기사	吳 文 奎
마포구점전설국도시계획과근무를명함		지방기사	金 殷 泰		
동대문구근무를명함		내무국총무과 주 사	崔 昌 欽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사회국의약과 지방주사	崔 尙 顯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전설국도시계획과 지방기원	吳 在 英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사방관리소 지방기원	南 宮 泳		

●四二九四年七月二十日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중구살림동 지방우사 金 潤 漢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선동구총무과 지방우사 金 益 淳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임동포구관리계一동 지방우사 李 敏 鎬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사표제출일자로소급발령한전임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제四도장 지방기사 崔 昌 林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수도국시설과 지방서기 李 敬 載

●四二九四年八月二日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남부병원 간호원 蔡 玉 子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중구총무과 지방우사 李 在 煥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공무원총무과 지방서기 李 龍 圭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임동포구호적병무과 지방서기 李 龍 圭

서울운동장 지방서기 鄭 聖 堯
호창운동장근무를명함
지방서기 李 達 寧

●단기四二九四年八月七日
서울운동장근무를명함
지방서기 李 達 寧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사외국의약과 지방기사 朴 鎭 輪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서부구호적병무과 지방우사 黃 榮 植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동부수도사업소 지방서기 吳 世 倫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동대문구총무과 지방서기 韓 宇 錫

●四二九四年八月三日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간호원예임함 金 奉 堯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四급十六호봉을급함
지방서기 金 奉 堯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서부병원근무를명함
●단기四二九四年七月二日

주사에임함	산림국시량과	수습행정인	金	元	培
四금五호봉을급함					
산림국시량과근무를명함					
●단기四二九四년八月十日	영등포총무과	기	사	金	鍾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學
●단기四二九四년八月九日	재무국세무과	지방참사	金	漢	經
내무국총무과근무를명함					
●단기四二九四년八月十二日			金	泰	源
지방서기에임함					
四금五호봉을급함					
성동수근무를명함			李	康	彦
지방서기에임함					
四금五호봉을급함					
선봉수근무를명함					

지방서기에임함				金	春	燮
四금五호봉을급함						
마포수근무를명함						
●단기四二九四년八月十四日	중구총무과	주	사	楊	光	熙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단기四二九四년七月二十日	전설국과리과	지방기사	金	起	曠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단기四二九四년六月二四日	중구호적병무과	지방서기	姜	弼	遠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단기四二九四년八月十九日	동대문구징수와	지방서기	韓	長	燮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단기 四二九四년 七월 一일

내국국시정과 지방주사 吳 東 根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단기 四二九四년 八월 一十三일

동부병원 지방기사 黃 東 根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중부병원 간오인 林 貞 洛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단기 四二九四년 八월 一十三일

성동보건소소장 의과 李 政 圭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마포보건소소장 의과 申 鎡 三

중로보건소장예보함

용산보건소 지방주사 金 允 鶴

마포보건소근무를명함

마포보건소 지방주사 李 獻 榮

용산보건소근무를명함

서대문보건소 지방주사 姜 侗 孝

광주보건소근무를명함

●단기 四二九四년 七월 三十一일

성동보건소근무를명함

중로보건소근무를명함

중로보건소 지방기사 徐 俊 植

서대문보건소근무를명함

●단기 四二九四년 八월 一十三일

제철공장 지방기사 李 鍾 燮

원예의하여그직을면함

●단기 四二九四년 七월 三十一일

종로구지주과 지방기사 金 昌 根

사무형편예의하여그직을면함

내과사무처행정관리국입사분석과도원출

●단기 四二九四년 八월 一十三일

수도육업무과장 사쿠관 宋 海 範

서대문구총무과장에보함

●단기 四二九四년 八월 一十六일

내국국시정과 지방주사 金 弘 根

중로구근무를명함

광 고

행여사망인발생공고

一, 국 처
 二, 본 처
 三, 주 소
 四, 성 명
 五, 성 별
 六, 연 령
 七, 인 상
 八, 착 의
 九, 소 지 품
 〇, 사망장소
 一, 사망년월일
 二, 사 인
 三, 가 매 장 지
 四, 취 급 처

한 국
 불 상
 불 상
 박 종 원
 남 자
 五 四 세
 신장五척五寸 체격후리
 흑색쓰봉 황색고무신
 없 음
 시립병원
 四二九四년七月四日
 견장결핵
 신림리공동묘지
 서대문구청

一, 국 처
 二, 본 처
 三, 주 소
 四, 성 명
 五, 성 별
 六, 연 령
 七, 인 상
 八, 착 의
 九, 소 지 품
 〇, 사망장소
 一, 사망년월일
 二, 사 인
 三, 가 매 장 지
 四, 취 급 처

한 국
 불 상
 불 상
 남 자
 四 〇 세
 신장五척六寸 하이가타
 회색작업복 흑색고무장화
 一〇〇환권八매 전차표
 영등포본동一二六
 四二九四년七月一六日
 심장마비
 신림리공동묘지
 서대문구청

한 국
 충남논산
 충남공주군남천면
 강길수
 남 자

六五六五

九、 소 지 품	八、 착 의	七、 인 상	六、 연 령	五、 성 별	四、 성 명	三、 주 소	二、 본 적	一、 국 적	一〇、 사망장소	九、 소 지 품	八、 착 의	七、 인 상	六、 연 령	五、 성 별	四、 성 명	三、 주 소	二、 본 적	一、 국 적	一〇、 사망장소	
없 음	국방색작업부	신장五척五촌 매머리	七三세	남 자	서 창 삼	불 상	불 상	한 국	영동포북동九번지	충남도민증	七월一八일	악물중독	신림리공동묘지	서대문구청						

一四、 취 급 처	一三、 가 매 장 지	一二、 사 인	一一、 사망년월일	一〇、 사망장소	九、 소 지 품	八、 착 의	七、 인 상	六、 연 령	五、 성 별	四、 성 명	三、 주 소	二、 본 적	一、 국 적	一四、 취 급 처	一三、 가 매 장 지	一二、 사 인	一一、 사망년월일	一〇、 사망장소
서대문구청	신림리공동묘지	익 사	四二九四년七월八일	당산동한강	없 음	없 음	신장五척五촌 체격후합	혹색작업부 백색런닝그	남 자	불 상	불 상	불 상	한 국	서대문구청	신림리공동묘지	노 쇠	四二九四년七월十二일	시립영동포병원

六五六

九, 소	저 품	없 음
一〇, 사	망 장 소	도립병원
一一, 사	망 년 월 일	四二九四년七月二八일
一二, 사	인	력 사
一三, 가	매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취	급 처	서대문구청
一, 국	적 적	한 국
二, 본	적 적	불 상
三, 주	소 소	불 상
四, 성	명 명	불 상
五, 성	일 일	남 자
六, 연	령 령	약二七세
七, 인	상 상	불 상
八, 착	의 의	불 상
九, 소	지 품	없 음
一〇, 사	망 장 소	관강인도교와 철교중간한 강북측 강변사장
一一, 사	망 년 월 일	단기四二九四년六月二四일
一二, 사	인	비골골절

一三, 가	매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취	급 처	서대문구청
一, 국	적 적	한 국
二, 본	적 적	불 상
三, 주	소 소	불 상
四, 성	명 명	불 상
五, 성	별 별	남 자
六, 연	령 령	七五세
七, 인	상 상	불 상
八, 착	의 의	불 상
九, 소	지 품	없 음
一〇, 사	망 장 소	시립남부병원
一一, 사	망 년 월 일	四二九四년七月二일
一二, 사	인	영양실조
一三, 가	매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취	급 처	서대문구청
一, 국	적 적	한 국
二, 본	적 적	불 상

六五八

一、	국	적	적	한	국	점수증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二、	본	적	부	부	의	사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三、	주	소	불	張	基	상	四二九四년七月一일
四、	성	성	張	張	基	환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五、	성	별	남	張	基	환	四二九四년七月一일
六、	연	령	四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七、	인	상	불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八、	착	의	불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九、	소	의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〇、	사	장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一、	사	년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二、	사	월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三、	가	일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四、	매	지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五、	장	지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六、	지	지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	국	적	적	한	국	점수증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二、	본	적	부	부	의	사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三、	주	소	불	張	基	상	四二九四년七月一일
四、	성	성	張	張	基	환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五、	성	별	남	張	基	환	四二九四년七月一일
六、	연	령	四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七、	인	상	불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八、	착	의	불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九、	소	의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〇、	사	장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一、	사	년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二、	사	월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三、	가	일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四、	매	지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五、	장	지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一六、	지	지	없	四	六	세	四二九四년七月一일

四 성	五 성	六 연	七 인	八 착	九 소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一三 가 매 장 지	一四 취 급
명	별	령	상	의	품	소	일	인	지	치
鄭 在 順	여 자	二 四 세	불 상	없 음	시 립 남 부 병 원	四 二 九 四 년 七 월 九 일	결 핵 성 복 막 염	신 사 리 공 동 묘 지	서 대 문 구 청	
국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九 소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一三 가 매 장 지	一四 취 급	一 國	二 本	三 主	四 成	五 成	六 年	七 人	八 着	九 小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품	소	일	인	지	치	적	적	소	명	별	령	상	의	품	소	일
없 음	시 립 남 부 병 원	四 二 九 四 년 七 월 十 一 日	인 후 루 엔 자	신 사 리 공 동 묘 지	서 대 문 구 청	한 國	불 상	불 상	불 상	약 三 五 세	불 상	불 상	없 음	한 장 인 도 교 상 루	지 점 백 사 장	四 二 九 四 년 七 월 十 一 日
국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一 五 五 五	자 디 발	일

六五七一

一、국	二、본	三、주	四、성	五、성	六、연	七、인	八、착	九、소	一〇、사	一、사	二、사	三、가	四、취
적	적	소	명	별	령	상	의	품	장	년	장	매	급
한	불	불	불	불	불	불	없	없	이태원동의인주택	이태원동의인주택	이태원동의인주택	이태원동의인주택	이태원동의인주택
국	상	상	상	상	상	상	음	음	二四호	二四호	二四호	二四호	二四호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一、국	二、본	三、주	四、성	五、성	六、연	七、인	八、착	九、소	一〇、사	一、사	二、사	三、가	四、취
적	적	소	명	별	령	상	의	품	장	년	장	매	급
한	불	불	불	불	불	불	없	없	이태원동의인주택	이태원동의인주택	이태원동의인주택	이태원동의인주택	이태원동의인주택
국	상	상	상	상	상	상	음	음	二四호	二四호	二四호	二四호	二四호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六五七二

八, 착	七, 인	六, 연	五, 성	四, 성	三, 주	二, 본	一, 국	一四, 취 급 처	一三, 가 매 장 지	一二, 사 인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〇, 사 망 장 소	九, 스 지 품	八, 착 의	七, 인 상	六, 연 령	五, 성 별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처	지	인	일	소	품	의	상	령	별							
불	불	二二	남	불	불	불	한	서대문구청	신사리공동묘지	영양실조	四二九四년七月十五日	시립남부병원	없	불	불	五	여							
상	상	새	자	상	상	상	국						음	상	상	十	자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〇, 사 망 장 소	九, 스 지 품	八, 착 의	七, 인 상	六, 연 령	五, 성 별	四, 성 명	三, 주 소	二, 본 적	一, 국 적	一四, 취 급 처	一三, 가 매 장 지	一二, 사 인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〇, 사 망 장 소	九, 스 지 품	八, 착 의	七, 인 상	六, 연 령	五, 성 별	四, 성 명	三, 주 소	二, 본 적	一, 국 적
四二九四년七月三日	시립남부병원	없	음	불	불	十七	남	십	불	불	서대문구청	신사리공동묘지	익 사	四二九四년七月十四日	동작동국군묘지	없	지	지	五	남	십	불	불	한
				상	상	세	자	하	상	상				一五		음	중	중	세	자	철	상	국	

六五七三

一〇, 사 망 장 소	九, 스 지 품	八, 착 의	七, 인 상	六, 연 령	五, 성 명	四, 성 명	三, 주 소	二, 본 적	一, 국 적	一四, 취 급 처	一三, 가 매 장 지	一二, 사 망 년 월 일	一〇, 사 망 장 소	九, 스 지 품	八, 착 의	七, 인 상	六, 연 령	五, 성 명	四, 성 명	三, 주 소	二, 본 적	一, 국 적	一四, 취 급 처	一三, 가 매 장 지	一二, 사 망 년 월 일	一〇, 사 망 장 소	
시립남부병원	없 음	불 상	불 상	약四五세	남 자	친 붕 도	불 상	불 상	한 국	서대문구청	신사리공동묘지	만성 장가다루	四二九四년七月二六일	시립남부병원	없 음	불 상	불 상	十五세									

一四, 취 급 처	一三, 가 매 장 지	一二, 사 망 년 월 일	一〇, 사 망 장 소	九, 스 지 품	八, 착 의	七, 인 상	六, 연 령	五, 성 명	四, 성 명	三, 주 소	二, 본 적	一, 국 적	一四, 취 급 처	一三, 가 매 장 지	一二, 사 망 년 월 일	一〇, 사 망 장 소	九, 스 지 품	八, 착 의	七, 인 상	六, 연 령	五, 성 명	四, 성 명	三, 주 소	二, 본 적	一, 국 적	一四, 취 급 처	一三, 가 매 장 지	一二, 사 망 년 월 일	一〇, 사 망 장 소
서대문구청	신사리공동묘지	영양실조	시립남부병원	없 음	불 상	불 상	약二五세	남 자	남 자	불 상	불 상	한 국	서대문구청	신사리공동묘지	四二九四년七月二七일	시립남부병원	없 음	불 상	불 상	약四五세	남 자	남 자	불 상	불 상	한 국	서대문구청	신사리공동묘지	四二九四년七月二五일	시립남부병원

六五七五

